

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동현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780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7월 2일

발 의 자 : 이동현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권수정, 김재형, 김호평, 문병훈,
송정빈, 오한아, 오현정, 이성배,
정진술, 한기영 의원 (10명)

1. 제안이유

-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후 외부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는 여전히 미세먼지가 남아 있어 이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
-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후 해제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살수 등의 세척조치를 하여 실효성 있는 행정절차를 수행하기 위함.
-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어린이 놀이시설에 살수 등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조치 노력을 의무화 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시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이후 어린이 놀이시설의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.
-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 12조(취약계층 등의 보호) 3항을 신설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의무화할 수 있다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, 「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경우 그 해제 이후 「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」 제2조제2호의 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.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2조(취약계층 등의 보호) ① · ②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12조(취약계층 등의 보호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경우 그 해제 이후 「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 지원 조례」 제2조제2호의 어린이놀이기구의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제3항(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해제 후 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조치 지원)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해제 후 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조치 지원

나. 전제

- 어린이놀이시설은 서울시에 있는 민간 및 공공시설 모두를 지원하고, 지원 범위는 세척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제
- 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조치는 살수차를 이용한 물세척으로 전제
- 어린이놀이시설의 현황은 2019.6.30.현재 8,691개소 기준으로 작성하고. 이후 증감은 없는 것으로 가정
- 물 세척 차량은 5톤 살수차를 임차하고, 임차비용은 현재 자치구(용산구)에서 임차하는 비용 1대 당 490,000원으로 전제하고, 이후 비용 증감은 없는 것으로 가정
- 세척 인력은 자치구의 기존 기간제 인력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(인건비 추가 발생하지 않음)
- 물 구입비용은 서울시상수도 요금인 1톤 당 1,410원(공공용, 누진제 미적용)으로 하고, 1톤으로 놀이시설 3개소를 세척한다고 가정
- 물 세척을 위한 추가적인 장비 구입비 등은 없는 것으로 가정
- 살수차 1대가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어린이놀이시설 1개소 당 30분씩 소요된다고 가정(1일 1대 16개소 세척)
-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해제 횟수는 6회로 가정
 - 2016년 6회, 2017년 6회, 2018년 5회
- 천 원 미만 반올림

다. 추계기간

-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이며, 이후에도 비용은 계속 발생

라. 방법

- 서울시 안전총괄과 및 상수도본부 자료 및 용산구청 공원녹지과 담당자 인터뷰 참조 추계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 비용 ≙ 8,104,645천원(연평균 1,620,929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 (2020)	2차년도 (2021)	3차년도 (2022)	4차년도 (2023)	5차년도 (2024)	합계
세입	-						
	-						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어린이놀이시설 물세척 비용	1,620,929	1,620,929	1,620,929	1,620,929	1,620,929	8,104,645
	-						
	소계(b)	1,620,929	1,620,929	1,620,929	1,620,929	1,620,929	8,104,645
□ 총 비용(b-a)		1,620,929	1,620,929	1,620,929	1,620,929	1,620,929	8,104,645

4. 덧붙이는 의견

- 의견 없음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예산분석팀장 정한섭

주 무 관 박경순

☎ 02-2180-7933

e-mail : kssunbi@seoul.go.kr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-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해제 후 어린이놀이기구의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조치 지원(살수차 임차 비용 및 물 구입 비용)

2. 세부추계내역

- 살수차 임차 비용 = 1,596,420천원
 - 임차비용(1대 490,000원) × 소요대수(543대) × 6회 = 1,596,420천원
 - ▶ 소요대수 : 어린이놀이기구(8,691개소) ÷ 1대 처리량(16개소) = 543대
- 물 구입 비용 = 24,509천원
 - 물 비용(1톤 당 1,410원) × 소요량(2,897톤) × 6회 = 24,509천원
 - ▶ 소요량 : 어린이놀이기구(8,691개소) ÷ 1톤 처리량(3개소) = 2,897톤